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546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김성순, 이다솜

피고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 종결2023. 5. 12.

판결 선고2023. 6.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F 사이에 2020. 7. 21. 체결된 재산분할합의를 441,280,9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41,280,9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피보전채권

1) 원고들은 F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690호로 847,000,000원의 물품(G 주식회사가 생산한 H 암호연산기, 이하 '암호연산기'라고만 한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5. 'F는 원고들에게 116,529,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한 결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888호)은 2020. 2. 7. 위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F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730,47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20. 2. 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2. 22. 확정되었다.

2) F는 2019. 4. 25. 위 제1심판결 선고 이후 129,277,13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들은 2019. 9. 30. 이의를 유보하고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3) 원고들은 위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2. 1. 27. 각 631,746원을 각 지급받았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J,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2. 4. 11. 각 18,884,899원, 2022. 5. 23. 각 5,635,769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위 경매사건을 통틀어 'F에 대한 각 경매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와 F의 이혼과 재산분할 등

1) 피고는 F와 1986. 5. 29. 혼인하였다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호협108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20. 8. 25.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피고와 F 사이에 2020. 7.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

1. F가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 사업으로 인한 판결금 채무 등은 전부 F가 변제하고 아내인 피고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2. F는 부부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번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 4억 8천만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F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여 위 금원 지급을 분할로(매달 금 2백만원씩 20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3. 피고는 F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F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차전7834호로 위 재산분할합의에 따른 480,000,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는 2020. 11. 7. 확정되었다.

4) F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 L동 소재 부동산이 M사업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F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가지는 위 보상금 중 484,260,82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타채16270호)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3. 이를 인용하였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 1.경 채권압류명령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938,035,960원을, 2021. 7. 27. 55,211,290원을 각 공탁(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년 금 제9042호, 2021년 금 제4710호)하였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2021. 4. 28. 386,176,371원, 2021. 10. 20. 55,104,547원, 합계 441,280,91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 14, 33, 34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F에 대하여 가지는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F의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금액을 피보전채권액인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액에 민법 제479조 및 제477조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더라도 남은 금액이 원고들이 사해행위취소로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금액 441,280,918원보다 큰 것이 명백하므로 피보전채권액에 대해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441,280,9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① F와 피고가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당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F의 무자력(채무초과) 여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1) F의 적극재산 F의 적극재산 내역 중 원고들과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F의 N에 대한 10억 원의 배상명령 채권

갑 제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N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5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서 같은 법원 2020초기655호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2020. 8. 13. 위 법원으로부터 'N는 배상신청인(F)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고 이후 위 배상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가 N로부터 위 배상명령 채권을 용이하게 변제받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F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N는 이미 2018. 3.경 O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위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O의 제안으로 2018. 6. 26. O, F와 에스프로 약정을 하게 된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O 측과 F로부터 각 5억 원씩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다음 날인 2018. 6. 27. O와 함께 은행으로 가서 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다른 수표로 교환하여 O에게 모두 교부해 버림으로써 F가 지급정지 등의 법적수단을 취할 수 없도록 하였다. N는 이미 그 당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후 F가 이 사건 배상명령을 받음으로써 집행권원을 확보하고도 N에 대하여 이를 집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일부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나) F 소유 부동산 가액

(1) F 소유의 부동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그 가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목록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들은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아래 표 '감정가액' 부분)에 따라, 피고는 2021. 10. 21. 실제 낙찰이 이루어진 가격(아래 표 '실거래가액' 부분)에 따라 그 가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경기도 남양주시 P, Q 호	370,000,000 (2020. 4. 20.)	551,700,000 (2021. 10. 21.)
4. 경기도 구리시 R 호		
9. 경기도 구리시 R 대 203m ²	763,171,760 (2020. 4. 20.)	818,890,000 (2021. 10. 21.)
10. 경기도 구리시 S 도로 9m ²		
11. 경기도 구리시 T 대 12m ²		
13. 전라남도 해남군 U 임야 595m	85,648,000 (2020. 6. 3.)	121,376,000 (2021. 6. 7.)
14. 전라남도 해남군 V 답 2030m ²		
15. 전라남도 해남군 W 전 605m ²		
16. 전라남도 해남군 X 전 826m ²		

(2)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고 난 뒤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I,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J, K 경매에서의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혼성립일인 2020. 8. 25.에 가까운 2020. 4. 20.과 2020. 6. 3.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 가액이 위 표의 '감정가액' 부분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이 이혼성립일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수용재결보상금 증액금액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F가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리시 Y 잡종지 600m², Z 대 331m², AA 임야 397m²(이하 통틀어 'L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1. 12.자 수용재결에서 수용개시일을 2021. 1. 6.로 하여 그 수용을 결정하면서 F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938,035,960원으로 결정한 사실, 위 손실보상금은 2021. 6. 24. 이의재결에서 합계 993,247,250원으로 증액되어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1. 7. 27. 그 증액분인 55,211,290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실, F 등이 이에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68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9. 22. L동 토지에 관한 F의 손실보상금을 합계 1,181,649,850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L동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증액분1) 이 F의 적극재산으로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F 사이에 협의이혼 성립 당시는 L동 토지 등이 수용되기 전이었으므로 L동 토지의 가액은 위 손실보상금 채권액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에서 이루어진 2020. 4. 17.자 기준 감정평가액 대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F의 적극재산에 L동 토지의 가액이 적게 반영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증액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L동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1,398,480,000원으로 피고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손실보상금 합계액 1,181,649,850원보다 크고, 위 감정평가액과 별도로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것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매매예약가등기 부분

피고는, 구리시 AB 전 643㎡(이하 'AB 토지'라 한다)의 등기상 소유자는 AC이었으나 F가 그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로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공탁된 579,592,200원의 1/2 상당액인 289,796,100원도 F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1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와 그의 누나인 AD는 공동으로 2015. 10. 7. AC으로부터 그 소유의 AB 토지를 4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 ② 향후 5년간 AC의 소유명의를 유지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15. 10. 30.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둔 사실, ③ F는 2020. 5. 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AD에게 양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F의 지분을 AD에게 이전해 준 사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11. 12. AB 토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인 AC 앞으로 보상금 579,592,200원을 공탁한 사실, ⑤ 위 공탁금 중 201,124,048원은 근저당권자가 출급하였고, 나머지 378,468,152원은 AC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다음 그중 대부분을 AD에게 이체한 사실, ⑥ 원고들은 AD를 상대로 위와 같이 F와 AD 사이에 AB 토지에 관하여 2020. 5. 1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계약을

189,234,076원[AD(AC) 측이 수령한 378,468,152원 중 F의 지분 상당액(1/2)]의 한도 내에서 취소해 달라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219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1. 24.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F와 AD 사이에 AB 토지에 관하여 2020. 5. 1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89,234,076원이 다시 채무자 F의 재산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피고는 이 사건에서 F의 적극재산에 위

보상금(다만 189,234,076원이 아니라 289,796,100원을 주장한다)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F와 AD 사이에 위 2020. 5. 18.자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두고 있는바 그 입장이나 주장이 모순되는 점(AB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피고와 F 사이의 이혼성립 이전인 2020. 5. 18. AD에게 이전되었는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앞서 살펴 본 내용과 함께 다툼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와 F의 협의이혼 성립일 당시 적극재산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	1. 구리시 Y 건물(1/2 지분)	27,000,000
2. 구리시 AA AE동 건물(1/2 지분)	16,302,000	
3. 구리시 AA AF동 건물(1/2 지분)	3,718,000	
4. 구리시 R 건물	326,441,760	
5. 남양주시 P아파트 Q호	370,000,000	
6. 구리시 Y 잡종지 600㎡ (1/2 지분)	873,000,000	
7. 구리시 Z 대 331㎡ (1/2 지분)	231,700,000	
8. 구리시 AA 임야 397㎡ (1/2 지분)	293,780,000	
9. 구리시 R 대 203㎡ ²	422,240,000	
10. 구리시 S 도로 9㎡	6,210,000	
11. 구리시 T 대 12㎡ ²	8,280,000	
12. 전남 해남군 AG 전 2058㎡	28,812,000	
13. 전남 해남군 U 임야 595㎡ ²	85,648,000	
14. 전남 해남군 V 답 2030㎡ ²		
15. 전남 해남군 W 전 605㎡		
16. 전남 해남군 X 전 826㎡ ²		
예금채권	17. 전남 해남군 AH 대 407㎡ ²	2,799,750
18. 전남 해남군 AI 전 294㎡ ²	18,938,000	
19. 전남 해남군 AJ 전 820㎡ ²		
20. 전남 해남군 AK 답 18㎡ ²	288,000	
21. 전남 해남군 AL 전 126㎡ (893/1260 지분)	442,035	
22. 전남 진도군 AM 대 331㎡ ²	2,919,420	

부동산	1. 구리시 Y 건물(1/2 지분)	27,000,000
23. 전남 해남군 AN 전 1646㎡	17,500,000	
24. 전남 진도군 AO 임야 10695㎡	7,500,000	
15.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사건에서의 제시외 물건	40,337,000	
가액	337,000	
AP은행	328,496	
AQ은행	98,534	
AR은행	5,111	
AS은행	25,921	
AT단체	6,737,820	
AU은행	1,734,602	
IBK기업은행	34,267	
우체국	334,221	
합계	2,793,154,937	

2) F의 소극재산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F 사이의 이혼 성립일 당시 진행 중이던 F에 대한 각 경매사건의 채권자 및 채권액 목록을 정리하여 보면, F의 소극재산은 일응 4,663,725,915원²⁾ 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F가 채권자 AV 등 12명과 함께 626,084,448원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 면제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와 함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암호연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F에게 구매대금으로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BF의 모 BG 대리), BH, BI, BJ가 'F에 대한 각 경매사건절차에서 변제 받는 이외에는 더 이상의 민, 형사항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2020. 4.자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 중 AW은 애초에 F의 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 피고는, 채권자 AV가 AW의 F에 대한 채권 288,000,000원을 양수한 사람이므로 AW의 2020. 4.자 확인서를 근거로 AV에 대한 F의 채무도 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V는

AW의 확인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9. 9. 5.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단50090호로 '2019. 7. 29. 양수금 청구채권'에 기하여 F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직접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의 AV와의 채무면제합의 주장(채권액 324,074,958원)은 이유 없다. 확인서를 작성한 나머지 채권자들(채권액 합계 302,009,49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각 채권자는 F와 사이에 F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채권자들이 F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각 몇 만원 정도로 매우 적고, 설령 위 채권자들의 F에 대한 채무가 전부 면제되었다는 전제 아래 계산하더라도 위 채권자들의 F에 대한 채무액 합계는 302,009,490원인데 이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소극재산 4,663,725,915원에서 제하더라도 이혼성립 당시 F의 적극재산(2,793,154,937원)을 초과하여 F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위 확인서에 채권자들이 'F와 공동으로 암호연산기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F가 대표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다른 공동 구매자들을 대신하여 매도인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들의 채권을 포함하여 F의 암호연산기 구매대금과 관련한 채무(이하 '이 사건 암호연산기 채무'라 한다)는 F의 진정한 채무가 아니므로 F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는, 원고들의 F에 대한 암호연산기 대금 반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8690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888호)에서도 '암호연산기의 매도인은 F가 아니라 G이고, F는 원고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구매대금을 모아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위 법원은 해당 판매계약서의 내용, 원고들과 F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과 돈의 흐름 등의 객관적인 사정들을 근거로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② 실제 암호연산기 구매대금을 F에게 송금한 많은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며 F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F의 경매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점, ③ 위 확인서는 F의 경매사건절차에서 조금이라도 변제받기를

희망하는 채권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서에 날인만 한 것으로 그 작성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F의 협의 이혼 성립 당시 F의 적극재산은 2,793,154,937원, 소극재산은 적어도 4,361,716,425원(= 4,663,725,915원 - 302,009,490원) 정도로 F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가) 피고와 F의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에 이 사건 암호연산기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암호연산기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암호연산기 채무는 피고와 F의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BK'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활동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중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고, F의 아들 BL는 원고들로부터 새로운 암호화폐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천받아 그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을 원고들에게 보내주고, 이후 신규 암호화폐가 발행되면 원고들은 각 암호화폐 개발회사들로부터 BL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에 상응하는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보내주는 형태의 거래를 해왔고, F 또한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으는 등 가상화폐 투자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행위나 그 업무에 암호연산기 구입이 수반된다거나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F 측이 투자금을 모으거나 투자를 결정하고 원고들이 F 측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실행하거나 중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던 것과 달리, 암호연산기 매매는 오히려 원고들이 F에게 그 구매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그 거래횟수도 1~2회에 그친 점, 원고들과 BL 사이의 가상화폐 투자행위는 원고들 또는 다른 채권자들과 F 사이의 암호연산기 매매행위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F가 가상화폐 투자업에 관여하고 그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암호연산기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확정

(1) 피고와 F의 이혼신고일인 2020. 8. 25. 기준 피고의 재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의 '여주시

BM 답 1673m², BN 답 2046m² 및 BO 답 2126m²의 부동산 가액은 합계 528,600,000원 정도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약 2억 원의 피담보채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AD에 대하여 2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 즉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매할 무렵 피고가 AD로부터 입금받거나 AD에게 송금한 계좌내역만으로는 그 대여관계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AD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그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F의 N에 대한 배상명령 채권 10억 원은 그 회수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결국 피고와 F 사이의 협의이혼이 성립한 2020. 8. 25.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은 대략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	적극재산	배상명령 채권 10억 원 제외 암호연산기 채무3) 원고들에 대한 채무 912,066,165원, 채권자 BQ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확인서를 써준 채권자들(AX, AY, AZ, BA, BB, BC, BD, BE, BF, BH, BI, BJ)의 채무 합계 302,009,490원, BR에 대한 채무 241,787,120원(갑 제7, 10호증, 을 제22호증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V에 대한 채무액 324,074,958원이 암호연산기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액은 제하지 않았다. 제외	2,793,154,937원
소극재산		3,147,863,140원	
순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 354,708,203원	
피고	적극재산	부동산 가액 합계 528,600,000원 예금채권4) AP은행 85,071,193원, AQ은행 3,296원, BS은행 5,115원, AU은행 12,659,766원 합계 97,739,370원 위 부동산에 관한 BP조합	626,339,370원
소극재산	피담보채무	200,000,000원	
순 재산(적극재산 - 소극재산)		426,339,370원	

3)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의 상당성 여부 이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합의로 인하여 F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을 제4, 5, 6, 21,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와 F의 혼인기간과 기여도, 헌신에 대한 보상, 이혼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액수나 재산분할의 내용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여 피고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441,280,918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F는 자녀 2명을 두고 약 35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자녀 2명이 모두 성인이 된 이후 이 사건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이르게 되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와 F가 이혼에 이르게 된 계기는 F의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투기적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신뢰상실이었던 것으로 보여(특히 이 사건 암호연산기 관련 채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위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와 F 간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F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와 F가 부부생활 도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F 명의로 해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년에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하였고, F의 수입이 거의 없는 2017. 1.부터 2022. 8.경까지 BT(주) 등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F가 2018년부터 이혼 당시까지 피고에게 합계 8억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중 2018. 6. 1. 5억 원, 2018. 6. 18.자 2억 원은 F와 N 사이의 에스프로 거래에 피고의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F가 피고에게 거액의 금액을 송금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위 표에 의하면 피고와 F의 협의이혼 당시 순재산 합계액은 71,631,167원 정도로서 당초 F의 재산규모나 피고와 F의 혼인생활기간을 고려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위 순재산을 분할 귀속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공탁금 129,277,139원을 수령하였고, 여러 경매사건에서 합계 98,082,682원을 배당받았으며, F 소유의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을 추가 수령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액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와 F의 아들 BL는 원고들에 대하여 약 596,065,000원 상당(가상화폐 122.91416667이더리움, 강제집행 불능일 경우 1이더리움당 4,850,000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6413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514호, 대법원 2022다226814호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권희

판사김혜령

판사윤영수

1) L동 토지의 증액분은 243,613,890원이나 피고는 이의재결에서 위 토지에 지상 건물 부분에 관하여 인정된 증액분을 포함하여 합계 275,373,550원이 F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의 채권액 합계 3,678,057,555원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K 경매의 채권액 합계 73,602,195원(중복부분 제외) + 그 무렵 원고들의 판결금 채권액 912,066,165원(갑 제7호증의 2 참조)

3) 원고들에 대한 채무 912,066,165원, 채권자 BQ에 대한 채무 60,000,000원, 확인서를 써준 채권자들(AX, AY, AZ, BA, BB, BC, BD, BE, BF, BH, BI, BJ)의 채무 합계 302,009,490원, BR에 대한 채무 241,787,120원(갑 제7, 10호증, 을 제22호증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V에 대한 채무액 324,074,958원이 암호연산기 채무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무액은

제하지 않았다.

4) AP은행 85,071,193원, AQ은행 3,296원, BS은행 5,115원, AU은행 12,659,766원